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조사·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 및 제56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